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재단법인 천정	② 시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76-82-00219	
③ 대표자 성명	장 진 민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 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info@skywell.or.kr	⑥ 사업연도	2021	
⑦ 전화번호	02-596-0010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2017.01.01.	
9 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광로39길 79, 401호			

2. 기부금의 수입 • 지출 명세

(단위: 원)

							(- : /
① 월별	① 수입	① 지출	①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_	_	72,627,120	8월	600,000	600,000	87,950,000
1월	20,850,000	20,850,000	72,627,120	9월	600,000	600,000	87,950,000
2월	600,000	600,000	72,627,120	10월	4,878,600	2,878,600	89,950,000
3월	5,600,000	600,000	77,627,120	11월	11,600,000	600,000	100,950,000
4월	20,700,000	600,000	97,727,120	12월	61,800,000	1,600,000	161,150,000
5월	1,302,380	11,079,500	87,950,000	합계	129,730,980	41,208,100	
6월	1,200,000	600,000	88,550,000	차기이월	_	_	161,150,000
7월	0	600,000	87,950,000	시기이걸	_	_	161,130,00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①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⑪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21.05	유희춘 학업지원사업 장학금	11	김정모/황병현 외	10,777,120
2021.10	유희춘 학업지원사업 도서기증 외	6	한국 지역아동센터 외	23,230,980
2021.12	복정방과후교실 지원	12	복정방과후 교실	7,200,000
19 연도별	② 지급목적	② 수혜인원	②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② 금액
2021	유희춘장학지원사업(현물포함)	17	김정모/황병현 외	34,008,100
	복정방과후교실 지원	1	복정방과후 교실	7,200,000
합 계				41,208,100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② 지출월	♨ 국가명	②6 지급목적	② 지급건수	②8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② 금액
③0 연도별	③ 국가명	③ 지급목적	③3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③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제출인: 재단법인 천정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 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 · 지출 명세

- ⑩라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라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범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⑲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19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②라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 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급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⑩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